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6-2호

Apr. 2026

비조치의견서
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책무구조도 제출 관련 비조치의견
(일련번호 : 260001, '26.3.25) -

1. 질의요지

- **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**는 이사회 결의 없이 **책무구조도**를 마련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') 제30조의3 제3항 본문 및 그 위반시 **과태료 부과** 근거인 동법 제43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**조치를 면제**

*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회사,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(상법 제383조)

2. 회답

-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
 - 상법 제383조에 의해 이사회 없이 이사 1~2인으로만 운영되는 **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** 또는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금융회사 등은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므로,
 -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의 **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정을 준용**하여, 이사회 의결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

3. 이유

- 책무구조도 마련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회회장 및 등기이사 등도 책무구조도의 적용 대상인 만큼,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책임하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이므로,
 - 국내금융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

(원문 링크)

https://better.fsc.go.kr/fsc_new/replyCase/OpinionDetail.do?stNo=11&muNo=117&muGpNo=75&opinionIdx=2305